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95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3일
제안자 : 이상정의원 외 3명

1. 수정이유

-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은 농가단위로, 지급금액은 연 50만원으로 하며,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집행부와 농민단체간의 합의안을 반영하여 정함

2. 주요내용(수정내용)

-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안 제8조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함
- 안 제9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하고, 시·군 관내에서 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함
- 안 제11조 지급 제외 요건을 강화하여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원 이상인 농가로 정하고,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 지급 제외 요건을 신설함
- 부칙으로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유효기간을 두어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 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함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안 내용 중 “농민수당”은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농민”은 “농업인”으로 수정한다.

안 제1조, 안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관리에”를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으로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심의·의결한다”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농정국장
3. 농업기술원장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이내
5.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
 - 가. 농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나. 농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7조제4항 중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농민수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로 수정한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④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③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지원제외)”를 “(지급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을 “2,900만원 이상인 농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 전(前)연도에”를 “신청 전(前) 5년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

6.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8.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안 부칙 중 본문을 제1조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조례명) 충청북도 <u>농민수당</u>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농업”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농업인”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p> <p>3. “농업경영체”란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p> <p>4. “농민수당”이란 <u>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u></p>	<p>(조례명) 충청북도 <u>농업인 공익수당</u>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농업”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p> <p>2. “농업인”이란 <u>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u>을 말한다.</p> <p>3. “농업경영체”란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p> <p>4. “농업인 공익수당”이란 <u>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p>	<p>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u>농민의 권리</u>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u>농민수당</u>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u>농민수당</u>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u>농업인</u> ----- ----- ----- <u>농업인 공익수당</u> ----- ----- -----.</p> <p>② ----- <u>농업인 공익수당</u> ----- ----- ----- -----.</p>
<p>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u>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관리</u>에 노력한다.</p>	<p>제4조(농업인의 참여) ----- ----- ----- ----- ----- ----- <u>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u> -----.</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u>농민수당</u>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u>농민수당</u> 심의위원회(이하 “위원</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u>농업인 공익수당</u> ----- ----- ----- <u>농업인 공익수당</u> -----</p>

원 안	수 정 안
<p>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u>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u></p> <p>2. <u>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u></p> <p>3. <u>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u></p> <p>4. <u>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p> <p>② -----</p> <p><u>심의한다.</u></p> <p>1. <u>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u></p> <p>2. <u>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u>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충청도청을 대표하는 사람 3명</u></p> <p>2. <u>도의원 2명</u></p> <p>3. <u>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u></p> <p>4. <u>도지사과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u>기획관리실장</u></p> <p>2. <u>농정국장</u></p> <p>3. <u>농업기술원장</u></p> <p>4. <u>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이내</u></p>

원 안	수 정 안
<p><u>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3명</u></p> <p><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u>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u></p> <p><u>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u></p> <p><u>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제7조(위원회의 회의)</p> <p>①~③ (생략)</p>	<p><u>5.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내</u></p> <p><u>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u></p> <p><u>가. 농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p> <p><u>나. 농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u></p> <p><u>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u>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u></p> <p><u>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p> <p><u>4.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u></p> <p><u>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7조(위원회의 회의)</p> <p>①~③ (현행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u>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농민수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u></p>	<p>④ ----- -----<u>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u></p>
<p>제8조(지급대상) ① <u>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u></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p> <p>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p> <p>② <u>도지사는 제1항의 지급대상을 근거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범위를 정한다.</u></p>	<p>제8조(지급대상) ① <u>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u></p> <p>1. <u>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u></p> <p>2. <u>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u></p> <p>③ <u>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되, 해당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p> <p>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p> <p>2.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p> <p>④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p> <p>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한다.</p> <p>②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p> <p>③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제10조(지급신청 등) 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원 안	수 정 안
<p>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⑤ 지급대상 농업인은 충청북도에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p> <p>⑥ 지급대상 농업인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p>	<p>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u>제11조(지원제외)</u>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p> <p>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p> <p>2. 신청 전(前)연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p>	<p><u>제11조(지급제외)</u> ----- -----.</p> <p>1. ----- ----- 2,900만원 이상인 농가</p> <p>2. 신청 전(前) 5년내 ----- ----- 농업인</p>

원 안	수 정 안
<p>3. 신청 전(前)연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민</p> <p>4. 신청 전(前)연도에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민</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3. 신청 전(前) 5년내 ----- ----- 농업인</p> <p>4. 신청 전(前) 5년내 ----- ----- -- 농업인</p> <p>5.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p> <p>6.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p> <p>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p> <p>8.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p>
<p>제12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p>	<p>제12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p>
<p>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p> <p>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p> <p>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p> <p>3.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p> <p>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p>

원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p>